

인천지방법원 2024. 7. 24 선고 2024가단5935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7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나.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5. 6.부터 2024. 5. 16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
값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2024. 5. 6.부터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0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: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

판사 박상훈

별지